

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북개발연구원운영등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산운영 및 관리) ① 충북개발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개발연구원육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은 도와 관내 시·군(이하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과 그 외의 출연금,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.

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3조(이사의 추천)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연구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의 발취

[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]

제8조 (임원의 선임) ③ 이사(이사장을 제외한다)는 정관에 명시된 자(이하 "당연직 이사"라 한다)와 원장이 학계·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3조 (운영재원)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[충북개발연구원정관]

제4조(이사)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② 다음각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1. 도지사, 행정부지사, 기획조정실장, 경제통상국장, 건설교통국장(5명)
2.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위원(2명)
3. 원장
4. 5억원 이상의 동산·부동산을 출연한 기관단체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한 자

③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,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.